

[※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]

## PB우대정기적금 특약

### 제1조 적용범위

PB우대정기적금(이하 ‘이 적금’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상호저축은행예금거래기본약관」 및 「적립식예금약관」의 제규정을 따른다.

### 제2조 계정과목

이 적금의 계정과목은 정기적금으로 한다.

### 제3조 가입대상

-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,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한다.
- ②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당 저축은행 방카슈랑스 가입 고객으로 방카슈랑스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고객에 한한다.
- ③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적금만기 시 까지 방카슈랑스 계약유지 고객에 한한다.
- ④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방카슈랑스 수수료 10만원 이상 고객에 한한다. 방카슈랑스 수수료는 가입보험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방카슈랑스 수수료 10만원 이상은 영업점 직원에게 확인된 건에 한한다.

### 제4조 계약기간 및 가입금액

- ① 이 적금의 계약기간은 12개월로 한다.
- ② 이 적금의 가입금액은 월 10만원 이상 월 100만원 이하로 한다.

### 제5조 저축방법

이 적금은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일자에 일정한 저축금을 입금한다.

### 제6조 이율적용

- ① 이 적금은 계약일 당시 고시된 계약기간별 만기지급 이율에 0.1%p~2.0%p의 우대이율을 적용하며, 우대이율은 정기적금 월불입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- ② 이 적금의 정기적금 월불입금액별 우대이율은 다음과 같다.

#### 정기적금 월불입금액 우대이율

10만원 이하 2.0%p 이내  
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.5%p 이내  
2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1.0%p 이내  
40만원 초과 60만원 이하 0.7%p 이내  
6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0.4%p 이내

- ③ 이 적금은 정기적금 우대금리 지급에 따른 이익이 3만원을 초과하거나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, 둘 중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우대이율 적용이 가능하다.

### 제7조 중도해지

중도해지 시 당 저축은행이 정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.

중도해지 이율은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에 고시된 금리안내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### 제8조 제한사항

① 이 적금은 방카슈랑스 건당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.

② 이 적금은 영업점 방문 시에만 가입이 가능하다.

### 제9조 제출서류

이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 시 본인이 ‘제3조 가입대상’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### 부칙(신설)

#### 제1조 시행일

이 특약은 2016년 7월 15일 신규계좌부터 적용되며, 2016년 7월 15일 이전 가입계좌는 가입시점의 특약이 적용된다.